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3. 4. 11 선고 2022가단1267 판결 [소유권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A

피 고 1. 대한민국

2. B

3. C

4. D

5. E

6. F

변 론 종 결 2023. 3. 7.

판 결 선 고 2023. 4. 11.

주 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상주시 G 도로 1,686㎡ 중 각 5분의 1씩의 지분이 피고 B, C, D, E, F의 각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 C, D, E, F는 위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가. 선정자 H에게 각 15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나. 선정자 I에게 각 150분의 6 지분에 관하여,

다.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J에게 각 150분의 4 지분에 관하여, 각 1931. 4.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상주시 K 임야 13.6 단보(이하 ‘이 사건 사정 토지’라 한다)는 그 토지대장에 1918. 9. 8. L이 사정받고, 1931. 4. 14. M과 N이 각 2분의 1 지분씩을 이전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L의 주소지는 ‘O리’로만 적시되어 있고, 다른 인적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사정 토지는 상주시 G 도로 1,6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으로 분할되었고, 위 토지는 현재 미등기이다.

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망 M의 공동상속인들이고, 상속지분은 원고(선정당사자)는 15분의 4 지분, 선정자 H는 15분의 1 지분, 선정자 I는 15분의 6 지분, 선정자 J는 15분의 4 지분이다.

라. 피고 B, C, D, E, F는 망 P의 공동상속인들이고, 상속지분은 각 5분의 1씩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사정 토지의 토지대장에 사정명의자로 L이 등재되어 있고,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제정된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조사규정에 따르면, 사정 당시 O리에는 L의 동명이인이 존재하지 않은 것이어서 결국 그 소유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나.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 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때, 또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때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참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4호에 따르면,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토지소유자가 위 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정정은 대위하여 신청할 수 없다.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표시 중 주소 기재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는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토지대장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자의 채권자는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대장상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없으므로,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자의 채권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42246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토지조사부에 L의 주소 중 지번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에 해당하고, 원고(선정당사자)로서는 피고 B, C, D, E, F를 대위하여 토지대장에 기재된 주소를 정정해달라고 신청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에게는 위 피고들을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토지가 위 피고들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1) 관련 법리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고(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46654, 46661 판결 참조),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의한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당해 토지를 원시취득하므로 적어도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되었다면 그 사정명의인 또는 그의 상속인이 토지의 소유자가 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정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피고 B, C, D, E, F 조상의 이름은 P으로서 한자(漢字)까지 일치하는 점, P의 본적지는 경북 상주시 Q동1) R인데, 토지조사부 기재상 사정명의인의 주소란에 통호가 기재되지 않은 이상 당시 O리에 'P'이라는 동명이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2)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의 조상 P과 이 사건 사정명의인 L은 동일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 C, D, E, F의 조상인 망 P은 이 사건 사정 토지를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토지를 원시취득하였고, 이를 순차로 상속한 피고 B, C, D, E, F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 B, C, D, E, F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예선

별지

지역 내에 같은 성명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경우 그 통호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다.